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52096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9,796,08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96,0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의 관계

피고는 2003. 2. 11.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C과 사이에 2명의 자녀(2004년생, 2005년생)를 두고 있다. 피고와 C은 피고가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에 관한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양육비도 모두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2018. 8. 30.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호협41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고, 2018. 12. 10.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20. 7.경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134285호로 양수금(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차량렌트 대금 8,404,023원 및 그 중 6,181,2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 15.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C은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2018. 10.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1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1억 7,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피담보채무액 111,837,877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과 피고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가장이혼을 하였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사해행위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가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에 앞서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후 4개월여 만에 피고와 C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4, 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혼인생활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도, 이혼 후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윤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충청남도 당진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
 지하1층 4293.50㎡ 1층
 895.06㎡
 2층 1019.78㎡ 3층
 1254.37㎡
 4층 1254.37㎡ 5층
 1254.37㎡
 6층 1254.37㎡ 7층
 1097.80㎡
 8층 1097.80㎡ 9층
 1097.80㎡
 10층 979.78㎡ 11층
 979.78㎡
 12층 864.48㎡ 13층
 852.96㎡
 14층 707.91㎡ 15층
 707.91㎡
 옥탑 71.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84.90㎡**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1. 충청남도 당진시 대 5103.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103.9분의 39.42

